

연세대학교 BK21 4단계 한국사회 대전환기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인재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 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4단계 BK21 사업 지원을 받는 연세대학교 한국사회 대전환기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인재 교육연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한국사회 대전환기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인재 교육연구단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 2 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교육연구단 목표) 한국사회 대전환기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인재 교육연구단은 대전환기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혁신공공인재의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행정 정책 이론 산출에 초점을 둔다.

제5조(조직구성) ① 교육연구단장과 부단장은 산하에 3개의 위원회, 1개의 자문단, Research Lab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학과장, 대학원주임, 참여교수를 포함한 전체 6인 내외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예산 심의, 제반 사업 운영, 연구과제의 종합적 관리 및 팀별 협력관계를 도모한다.
2. 국제화위원회는 교육연구단 단장과 KOICA-아세안 전자정부 분야 석사학위 연수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참여교수 및 해외학자 등 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국제간 공동연구 추진, 대학원생 해외연수과정 운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기획한다.

3. 연구·진로위원회는 교육연구단 단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Research Lab 소장 등 6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연구인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과정과 진학 및 취업 지원을 기획한다.
4. 자문단은 교육연구단 외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교육연구단의 연구 방향, 교육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겸한다.
5. Research Lab 구성 시 교육연구단 내의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 외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연구행정) 4단계 BK21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사무실, 교육연구단 소속 연구행정인력을 둔다.

제 3 장 참여교수

제7조(교육연구단의 장)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에 준용한다.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단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의 장은 본 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수행으로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교육연구단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

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교육연구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⑧ 교육연구단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선정 전 기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해, 사업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의 장을 겸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에 준용한다.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연구소 등 소속으로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 되어 있지 않은 교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학과(융합전공 포함)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35조(교육연구단 운영비) 및 별표4,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 및 범위는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성과급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5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5,000만원(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25%

이내) 이내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별표3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운영비에서 성과급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5천만원(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 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25% 이내)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업 훈령 및 지침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집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퇴직금 및 인건비, 4대 보험 관련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

(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학술활동지원비는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전문가 초청 자문료는 원고료, 강사료 및 위원 수당 등으로 대학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단 내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한 번역료, 자문료 및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다. (동일 학과(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소속 전임 및 겸임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

협력 전담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

- 사업 관련 문헌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해당 도서는 전부 대학에 귀속하여야 한다.

- 사업 및 연구수행과 무관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 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등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등록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 4단계 BK21 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과제물 보고서의 판권, 교육과정 개편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결과물 판권 외 각종 유형적 발생품의 관리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연구단과 산학협력단 합의하에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4단계 BK21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7.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 행사 일시·장소·참석자 및 회의내용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행사와 관련 없는 식대, 행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행사 당 1회를 초과하는 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종일 행사 등 행사기간 및 일정 상 부득이한 경우 행사의 목적, 참석대상, 세부일정, 소요 경비 등을 포함한 사전기안(사전 내부결재필수)에 따라 추가 식대 집행이 가능하다.

- 주말 및 자정(24:00) 이후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8. 그 외에 우수논문경진대회 등 교육연구단 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일회성 포상금, 자체평가 시 외부위원으로 활용되는 전문가 초청 필요 경비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타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학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에 준용한다.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신청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 변경시 신규참여교수는 참여를 희망하는 미참여교수 중 최근 3년 연구실적 우수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실적의 범위는 국내외게재 및 게재예정 학술논문이며, 연구실적 산정은 4단계 BK21 참여교수 자격요건 인정 항목 및 환산방법에 따른다.

제 4 장 참여대학원생

제10조(참여대학원생의 자격)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11조(참여대학원생),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취업·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의·치·한의학 분야의 참여대학원생 중 기초교수 지도학생 비율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중 기초교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 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7.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8.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

④ 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⑧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⑨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⑩ 교육연구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⑪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제11조(지원대학원생의 자격)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13조(지원대학원생) 및 제30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4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기준)에 준용한다.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미래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단,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 대학 및 교육연구단이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130만원, 박사수료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교육연구단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연구단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별표6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 기준은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정하여 지급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 동 사업 훈령 제29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⑥ 그 외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단과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미래인재양성사업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팀과 인문사회 분야의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한다.

2.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 기준은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연구장학금은 학생별 개인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연구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의무) ① 참여대학원생은 제13조 ②항의 학술활동보고서([서식 1])를 제출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본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모든 연구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연구윤리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학원생의 선발) ① 참여대학원생은 2월 초순, 8월 초순에 제출하는 학술활동보고서에 다음 학기 지원대학원생 신청 희망 여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원희망을 신청한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대학원생 자격기준 적격 여부, 학술활동보고서([서식1])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③ 선발 심사는 2월 말, 8월 말까지 완료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과가 확정되면 참여교수 및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④ 교육연구단은 4월 초, 10월 초까지 지원대학원생 명단을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선정된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구비서류를 4월 초, 10월 초에 제출한다.

⑥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우선 순위는 아래의 각 호 순서에 따른다.

1. 본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가 해당 학기 지원대학원생 선발 규모를 확정한다.

2. 참여교수별 연구실 지정 BK지원대학원생 1인을 선정한다.

3. 석박사신입생 fellowship을 선발하여 우수신입생에게 BK지원대학원생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의 선발과정 및 결과는 본 학과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전담한다.

4. 위 단계 1~3의 수행 후 잔여 규모에 대하여 학술활동성과 우수자 상위순으로 BK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⑦ BK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활동성과평가 산정 공식은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 개인 취득 점수 = 논문게재 + 학회발표 + 학점 + 콜로키움 및 멘토링
2. 논문게재 환산편수 1편=100점
3. 학술대회 환산편수 1편=30점(석사), 성과인정 범위는 최대 60점
학술대회 환산편수 1편=25점(박사), 성과인정 범위는 최대 50점
4. 학점: 3.6 ~ 4.3 scale → 0 ~ 25점
5. 콜로키움 및 멘토링 1회 참가 = 1점
6. 당해 학기 : 직전 학기 = 70 : 30 (재학 1학기생은 당해학기 성과를 100% 인정한다.)
7. 학술활동성과평가 산정 공식은 학기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사회 대전환기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인재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

제14조(지원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의 학술활동역량 및 범위에 따라 정기인건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4단계 BK21 우수 대학원생상) ① BK참여대학원생 중 교육·연구 우수학생 및 융합형 연구, 도전적 연구, 대전환기 관련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에게 우수대학원생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선발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단, 수상 및 지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는다.

③ 후보자격은 다음 학기 BK참여대학원생 또는 BK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4단계 BK21 사업에 부합하는 교육 및 연구성과를 창출한 학생이다. 심사 범위는 직전 두 학기 학술활동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④ 'Rhee Yang Soo Fellowship Award' 대상자 선발 시 박사과정 최우수학생, 석사과정 최우수학생을 선발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연구장학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선발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단, 수상 및 지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는다.

⑤ 'YUPA Excellence Award'에는 박사과정 상위 20% 학생, 석사과정 상위 20% 학생을 선발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연구장학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는다. 선발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단, 수상 및 지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는다.

- ⑥ “Great Transformation Research Grant” 대상자는 대전환기 한국사회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학원생 중 선발하며, 대상자에게는 상장과 연구장학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선발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단, 수상 및 지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는다.
- ⑦ “Pioneer Research Grant” 대상자는 도전적 연구를 수행한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학원생 중 선발하며, 대상자에게는 상장과 연구장학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선발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매년 3월 또는 9월에 실시한다. 단, 수상 및 지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는다.
- ⑧ “Collaborator Award”에는 분야 간 협업연구를 수행한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학원생 중 선발하며, 대상자에게는 상장과 연구장학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선발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단, 수상 및 지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는다.
- ⑨ 상기 4단계 BK21 우수 대학원생상의 인센티브는 BK21 교육연구단 예산 중 대학원생연구장학금을 활용하되 필요시 BK교비 대응자금에서 참여대학원생 최대 지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석·박사학위논문 연구지원금) ① 참여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생 또는 박사수료생을 대상으로 석·박사학위논문 연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 선발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지원대상을 심사한다.
- ③ 예비심사를 통과한 석·박사학위 논문계획서 중 우수계획서를 대상으로 자료조사지원, 영문교정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석·박사학위논문 연구지원금은 BK21 교육연구단 예산 중 학술활동지원비를 활용하되 필요시 매칭, 대응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학원생의 관리) ① 교육연구단은 지원대학원생의 자격, 의무, 장학금, 교육 및 연구활동, 기타 지원 등에 대하여 관리한다.

- ② 교육연구단은 매년 3월 초, 9월 초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리사항을 숙지시킨다.

제 5 장 신진연구인력

제18조(신진연구인력)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14조(신진연구인력)에 준용한다.

제14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제19조(신진연구인력의 임용)** ① 2인 내외의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본 교육 연구단은 필요 시 산학협력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채용심사는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육연구단 전체 참여교수가 심사할 수 있다.
- ③ 신진연구인력의 근로여건은 교내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서에 준용한다. 재계약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다. 채용된 신진연구인력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급여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5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에 준용한다.

제15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①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본 지급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외에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총당금 기관부담금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에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건비 중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 시 지급한다. 이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월 지급 기준액(300만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276.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퇴직금 관리를 위한 산학협력단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충당,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다만, 해당 참여인력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통장으로 이관된 금액은 사업비 통장으로 환입 처리한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매 학기말 교육연구단 운영, 교육, 연구 부문에서의 활동성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신진연구인력의 활동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 6 장 연구행정인력

- 제20조(연구행정인력의 임용)** ①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행정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

다.

- ② 채용심사는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육연구단 전체 참여교수가 심사할 수 있다.
- ③ 직함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채용된 연구행정인력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④ 연구행정인력은 사업비 관리를 포함하여 교육연구단 연구행정 일체를 전담한다.

제21조(연구행정인력의 근로복지) ① 연구행정인력의 근로여건은 교내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서에 준용한다.

- ② 최초 임용시 1년 계약하며 근로계약서상에는 사업연차와 기간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연봉협상을 할 수 있다.
- ③ 연구행정인력의 급여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의 인건비 기준에 준용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연구행정인력의 활동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사업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한다.
- ⑤ 근로시간은 주 5일, 점심휴식 1시간을 포함하여 일 7시간으로 한다. 교육연구단 사정에 따라 탄력근무가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 체결시 교육연구단장, 신진연구인력과 협의 하에 정하며 근무시간을 전체 참여연구진에게 공지한다.
- ⑥ 휴가는 연 24일로 한다. 근로계약 시작 후 첫 1개월은 월차 사용을 금지한다. 월차는 총 22일이며 근로계약 2개월 시작하는 월부터 매월 2일씩 월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하다. 나머지 2일은 매월 월차발생일수와 관계없이 근무 2개월부터 사용 가능하다.

제 7 장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제22조(지원범위) ①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학술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에 준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

- ② 신청자의 지원 개요를 교육연구단장에게 사전 보고하며 지원여부 및 규모는 국제화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집행한다.
- ③ 참여교수의 경우, 참여대학원생과 공저인 국제학술대회 발표 출장비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다.

제23조(국내 학술논문 게재) ① 참여대학원생이 저자로 표기된 국내학술논문 게재에 대하여 게재료 전액을 지원한다. 단, 정부 또는 민간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어 연구사업 사사를 표기한 논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지원비에서 지원한다.

제17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①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 인력의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 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비용,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교육연구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 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논문 저자소개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소속임이 표기되어야 한다.
- ④ 해당 학회로부터 게재료 안내를 받으면 이를 교육연구단에 보고하고 교육연구단에서 학회에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 ⑤ 게재료 지원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서식2]), 게재논문 인쇄용 pdf 파일, 게재료 안내 이메일(학회발송)전문을 구비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교육연구단은 지원 개요를 교육연구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는다.
- ⑥ 논문 투고시에 발생하는 입회비, 연회비, 심사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⑦ 미참여대학원생 중 차년도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고 잠재성장력이 높은 대학원생에게는, BK교비 대응자금에서 참여대학원생 최대 지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제 학술논문 투고) ① 참여대학원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저작하는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영문교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부 또는 민간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어 연구사업 사사를 표기한 논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지원비에서 지원한다.

제17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①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 인력의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 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비용,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교육연구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

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논문 저자소개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소속임이 표기되어야 한다.
- ④ 영문교정료 지원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서식3]), 투고논문 파일을 구비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 ⑤ 논문 투고시에 발생하는 입회비, 연회비, 심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 ⑥ 미참여대학원생 중 차년도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고 잠재성장력이 높은 대학원생에게는, BK교비 대응자금에서 참여대학원생 최대 지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국내 학술대회 발표) ①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이 저자로 표기된 국내학술대회 구두 논문 발표, 포스터 발표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원한다.

- ② 논문별 저자 중 1인, 포스터는 저자 1인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학술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대학원생에게 우선 지원한다.
- ③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지원비에서 지원한다.
- ④ 지원규모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제5장 여비] 기준에 준용하여 지원한다.
- ⑤ 단, 수도권 외 지역 출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숙박비, 교통비 내에서 지원한다.
- ⑥ 국내 학술대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⑦ 사전신청시 신청서([서식4]), 발표 논문 및 포스터의 전문 또는 일부 파일, 학술대회 프로그램(성명 및 소속기관 기재) 파일을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 ⑧ 발표 후 출장보고를 한다. 출장보고서, 발표 논문 및 포스터 전문 파일, 학술대회 프로그램(성명 및 소속기관 기재),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원본을 제출한다.
- ⑨ 미참여대학원생 중 차년도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고 잠재성장력이 높은 대학원생에게는, BK교비 대응자금에서 참여대학원생 최대 지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제 학술대회 발표) ① 참여대학원생이 저자로 표기된 국제학술대회 구두 논문 발표, 포스터 발표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34조(국제화경비)에 준용한다.

제34조(국제화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포함)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

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3.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판작 10편 이상, 출판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4.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③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판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일 초과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③ 단기해외연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34조(국제화경비),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8조(국제화경비) 제3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에 준용한다.

제18조(국제화경비) ③ 단기해외연수 (연수기간 : 15일 이내)

1.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하며,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전시회 출판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등을 집행할 수 있다.

3.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침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판작 10편 이상, 출판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 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판·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5.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여비(학회참가, 단기연수)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지원규모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제5장 여비] 기준에 준용한다. 단, 당해 사업연도 국제화경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⑤ 논문 또는 포스터의 저자 1인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학술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대

학원생에게 우선 지원한다.

- ⑥ 국제 학술대회 참가등록마감 2주일 전까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⑦ 학회등록비 신청시에는 신청서([서식5]), 학회발표수락 이메일, 학회등록비 결제영수증 원본, 학회등록비 요금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회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교육연구단은 지원 개요를 교육연구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는다.
- ⑧ 출장신청시에는 학회발표 수락 이메일, 항공료 및 숙박비 결제 영수증 원본, 항공료 e-ticket, 학회 프로그램(장소, 일정, 소속기관 및 성명 등 명시), 해외연수 신청서,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 ⑨ 출장보고시에는 출장보고서, 해외연수 신청서,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 학회 프로그램, 보딩패스 원본,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사본을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 ⑩ 미참여대학원생 중 차년도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고 잠재성장력이 높은 대학원생에게는, BK교비 대응자금에서 참여대학원생 최대 지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장기해외연수) ① 참여대학원생 중 장기해외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 ②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34조(국제화경비),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8조(국제화경비) 제4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에 준용한다.

제18조(국제화경비) ④ 장기해외연수 (연수기간 : 15일 이상)

1.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тей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인턴십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3.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 ③ 선발기획은 운영위원회, 국제화위원회가 총괄한다.
- ④ 후보는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재학생 중 희망자로 한다.
- ⑤ 희망자는 신청서([서식6]) 지도교수 추천서, 학술활동보고서, 연구계획서, 연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국제화위원회는 이를 종합평가하여 선발한다. 심사항목은 희망분야, 희망기관, 준비정도, 연수계획, 연수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 ⑥ 해외연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되며,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교육연구단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때

2.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5. 선정 이후에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6. 연구 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7. 관리지침(연수계획서 포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8.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해외연수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⑦ 장기해외연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수진행 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1. 착수보고서: 연수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진도보고서: 연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귀국보고서: 연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기타보고서: 교육연구단에서 요구시 수시 제출
 5. 결과보고서: 연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⑧ 장기해외연수자는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 8 장 국제화경비 집행 및 관리

제28조(국제화경비)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34조(국제화경비),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8조(국제화경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에 준용한다.

제18조(국제화경비)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2.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3.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다.
5.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및 참여교수의 여권 발급 수

수료 등 개인성 경비는 국제화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

6. 해외연수는 선발기준, 지원기준,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하며, 대학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교육연구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할 수 없다.

8.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구비된 연수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하며,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전시회 출품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등을 집행할 수 있다.

3.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침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

원할 수 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5.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여비(학회참가, 단기연수)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인턴쉽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3.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⑤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4.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계획과 무관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⑥ 기타 교육연구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행사를 포함한다.) 경비(회의장 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3항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제3항과 같다.

3. 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및 출장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여부 및 규모는 국제화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집행한다.

③ 해외학자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8조(국제화경비) 제5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에 준용한다.

제18조(국제화경비) ⑤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4.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계획과 무관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기타 교육연구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 제18조(국제화경비) 제6항 및 제7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에 준용한다.

제18조(국제화경비) ⑥ 기타 교육연구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행사를 포함한다.) 경비(회의장 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3항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제3항과 같다.

3. 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및 출장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타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활동

제29조(목적)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개별 연구활동비 지급 외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술대회, 콜로키움, 세미나, 특강 등의 학술활동을 개설 및 지원한다.

제30조(국제학술대회) ① 본 내규 제26조에 준용하여 연 1회 이상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국제화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다.

제31조(콜로키움) ① YUPA 콜로키움, 대학원생 콜로키움, 대전환기 시리즈 콜로키움

(GTR)을 수시 개최한다.

- ② YUPA 콜로키움은 국내외 유명학자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행사개최비는 사업운영비 중 회의 및 행사경비, 특강료는 사업운영비 중 학술활동지원비(전문가 초청 자문료)에서 지출한다.
- ③ 대학원생 콜로키움은 참여대학원생 중심의 연구모임으로 진행한다. 행사개최비는 사업운영비 중 회의 및 행사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④ 대전환기 시리즈 콜로키움(Great Transformation Research(GTR) Colloquium Series)은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연관되는 한국사회 대전환기 관련 국내외 유명학자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행사개최비는 사업운영비 중 회의 및 행사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특강료는 국내 학자의 경우 사업운영비 중 학술활동지원비(전문가 초청 자문료), 해외 학자의 경우 국제화경비에서 지출한다.

제32조(Research Lab) ① Research Lab 운영을 통해 융합적 연구 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 ② Research Lab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참여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③ Research Lab에서 진행하는 학술·연구 활동에 대해 소속 연구원(BK참여교수, BK참여대학원생)에 학술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기초역량증진프로그램) 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기초역량 향상을 위해 방법론, 연구설계, 영문논문작성법, 연구윤리, 프레젠테이션 향상법 등을 주제로 하는 기초역량증진프로그램을 개설한다.

- ②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 국제화위원회, 진로위원회에서 기획한다.
- ③ 개최비는 사업운영비 중 회의 및 행사경비, 강의료는 사업운영비 중 학술활동지원비(전문가 초청 자문료)에서 지출한다.
- ④ 프로그램 수강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참여대학원생, 학과 대학원 재학생을 우선순위로 한다.
- ⑤ 참여대학원생이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는 무료이며 외부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정의 수강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제 10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4조(평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 12. 24 제정)」 제4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상시 준비한다.

제35조(자체평가) ① 교육연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기간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 ② 자체평가보고서 발간 기획은 교육연구단장, 신진연구인력, 연구행정인력이 수행한다.
- ③ 자체평가보고서는 교육부문, 연구부문, 운영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재정, 인사 및 조직 성과관리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한다.
- ④ 자체평가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거나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6조(성과관리)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인력의 동기부여를 위해 정기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말, 사업연차 종료 1개월 전에 성과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자체 평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다.
- ③ 성과관리 대상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다.
- ④ 성과관리 대상은 성과업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증빙되지 않는 성과업적은 성과업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성과업적 산정 방법은 4단계 BK21 사업계획서 제출시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37조(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성과관리) ①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은 매년 2월 중순, 당해 연도 연구성과 목록 및 증빙자료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 ② 연구성과는 학술논문(publication, forthcoming, R&R, under review 등 구분), 학술대회 발표, 저서, 연구비 수주 실적을 범위로 한다.
- ③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8조(참여대학원생 성과관리) ① 참여대학원생이 매년 1월 중순, 7월 중순에 제출한 학술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생 연구성과를 관리한다.

- ②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학술활동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대학원생 선발, 우수학생 선발, 장기해외연수자 선발, 취업추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의 성과는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한다.

제 11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9조(사업비 집행 관리)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 12. 24 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 3.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